

의안번호	2216079
의 퇴 인	김장겸의원
회 답 일	2026. 2. 10.
추계번호	26B0223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4조의27(이용자의 접속 국가 확인 등) 신설	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, 매출액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다음 각 호의 정보(이하 “접속정보”라 한다)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(제1항) 1.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가입 시 접속 국가 2.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때의 접속 국가 3. 실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 접속 여부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	의무규정
		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접속정보확인 의무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술적·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4조의27(이용자의 접속 국가 확인 등) 신설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, 매출액,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접속정보확인 의무사업자”)로 하여금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¹⁾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접속정보확인 의무사업자의 기술적·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기술을 도입하는 비용을 지원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다만, 현 시점에서는 접속정보확인 의무사업자의 범위, 기술적·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기술의 종류·내용 및 도입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관련 정보가 없으므로, 소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 -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련 정보 등이 부재하여 해당 기술적·관리적 조치에 필요한 기술의 도입 비용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임
 - 참고로,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실시한 ‘2025년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이용통계 조사’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웹사이트²⁾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90,860개사) 중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는 총 71개사이고,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총 281개사로 나타남
- ※ [참고자료] ‘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웹사이트 운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현황’(2025년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이용통계 조사)

1)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가입 시 접속 국가,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때의 접속 국가, 실제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를 통한 우회 접속 여부 등

2) ‘2025년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이용통계 조사’에서는 2024년말 기준 랭키닷컴(주식회사 미디어채널의 웹서비스명으로 웹사이트 분석 및 평가 서비스 등 제공)에 등록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조사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예승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

※ [참고자료] ‘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이거나 연매출액 10억원 이상인 웹사이트 운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현황’(2025년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이용통계 조사)

(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출자료³⁾)

[표 1]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현황(2024년 기준)

구 분	사업자 수
1150만명 이상 1160만명 미만	1
660만명 이상 670만명 미만	1
360만명 이상 370만명 미만	1
260만명 이상 270만명 미만	1
210만명 이상 220만명 미만	1
200만명 이상 210만명 미만	1
19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	1
110만명 이상 120만명 미만	1
70만명 이상 80만명 미만	1
60만명 이상 70만명 미만	1
50만명 이상 60만명 미만	3
40만명 이상 50만명 미만	7
30만명 이상 40만명 미만	5
20만명 이상 30만명 미만	11
10만명 이상 20만명 미만	35
합 계	71

주: 위 사업자 수는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그 운영 사업자를 조사한 것으로, 여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일 사업자가 중복된 수치임

3)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‘2025년 정보통신서비스 유형별 이용통계 조사’ 결과를 토대로 제출한 자료임

[표 2]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현황(2024년 기준)

구 분	사업자 수
14조원 이상 15조원 미만	1
10조원 이상 11조원 미만	3
7조원 이상 8조원 미만	2
6조원 이상 7조원 미만	2
5조원 이상 6조원 미만	1
4조원 이상 5조원 미만	1
3조원 이상 4조원 미만	3
2조원 이상 3조원 미만	2
1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	2
1조원 이상 1조5000억원 미만	4
9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	5
8000억원 이상 9000억원 미만	1
7000억원 이상 8000억원 미만	6
6000억원 이상 7000억원 미만	3
5000억원 이상 6000억원 미만	1
4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	3
3000억원 이상 4000억원 미만	7
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	10
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	14
9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	3
800억원 이상 900억원 미만	3
70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	10
6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	1
500억원 이상 600억원 미만	8
4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	7
300억원 이상 400억원 미만	6
29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	1
280억원 이상 290억원 미만	1
260억원 이상 270억원 미만	1
250억원 이상 260억원 미만	1
240억원 이상 250억원 미만	1
230억원 이상 240억원 미만	3

구 분	사업자 수
220억원 이상 230억원 미만	1
200억원 이상 210억원 미만	1
19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	2
180억원 이상 190억원 미만	13
170억원 이상 180억원 미만	4
160억원 이상 170억원 미만	3
150억원 이상 160억원 미만	3
140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	3
130억원 이상 140억원 미만	5
120억원 이상 130억원 미만	5
1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	5
100억원 이상 110억원 미만	8
9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	4
80억원 이상 90억원 미만	7
7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	5
6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	10
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	8
4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	12
3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	20
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	15
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	30
합 계	281

주: 1) 위 사업자 수는 웹사이트를 기준으로 그 운영 사업자를 조사한 것으로, 여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동일 사업자가 중복된 수치임

2) 매출액은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하되, 공개자료가 미존재 시 발표된 최신년도 자료를 반영함